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25일, 맹성규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8. 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맹성규)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가. 공동소유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개선

현행법 제1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가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민법」에 따라 공동소유(공동상속을 포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가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의 말소등록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일부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각종 관리비용(보험료, 자동차세)을 자동차를 관리하는 상속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공동소유자의 상속자 동의서가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 제1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도 하역금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요건으로 ①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 말소등록 사실의 공시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말소등록이 가능함.

그런데 첫 번째 요건만 충족할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고, 두 번째 요건만 충족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과 관계없이 말소등록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공동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13조제12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시·도지사가 말소등록을 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13조제12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가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 지분의 합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의 임대, 보수 등의 관리행위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의 변동을 수반하여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말소등록의 경우 이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 「주택법」 등 유사 입법례 등에서 토지 등의 공유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할 수 있음.

한편,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13조제1항제9호의 ‘나머지 자동차 소유자’를 “공동소유자”로 약칭하고 있어 폐차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서는 말소등록의 요건 중 하나로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여 신청하는 소유자를 포함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하나의 약칭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